

알고리즘 공정성 검증 신청양식

- 예금플랫폼 알고리즘 -

1.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 검증신청서(별지1)
2. 사업자등록증(별지2)
3. 단계별 증빙화면(별지3)
4. 소스코드(별지4)
5. 자가평가서 점검결과(별지5)

<별지 1>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 검증 신청서

서비스명 : _____

_____은(는)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에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 검증(이하 “알고리즘 검증”이라 한다)을 신청하고, [첨부1]의 약정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첨부1]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 검증 약정서

제1조(용어의 정의) 본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 검증(이하 “알고리즘 검증”이라 한다) : 온라인 금융서비스에 탑재된 알고리즘이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청기관 : 알고리즘 검증을 결제원에 신청한 기관을 말한다.
3. 수수료 : 결제원의 알고리즘 검증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를 말한다.

제2조(알고리즘 검증신청) 알고리즘 검증 신청은 신청기관이 본 약정서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금융결제원 알고리즘 검증 통합포털(이하 “통합포털”이라 한다)을 통해 알고리즘 검증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완료된다.

제3조(알고리즘 검증신청 승낙) ① 결제원은 신청기관의 알고리즘 검증신청을 승낙하고 통합포털을 통해 신청기관에 통지한다.

② 결제원은 신청기관의 신청에 대하여 알고리즘 검증 신청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제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기관이 본 약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이전에 알고리즘 검증 신청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결제원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결제원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검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결제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5.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검증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 ③ 결제원은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알고리즘 검증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에 결제원은 이를 통합포털을 통해 신청기관에 알리도록 한다.

제4조(신청기관 의무) ① 신청기관은 이 약정과 알고리즘 검증을 위하여 통합포털에 게시된 결제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관은 통합포털에 게시된 서식에 맞춰 알고리즘 검증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하며 결제원에서 보완 요청 시 소명을 하거나 보완하여 다시 제출한다.

③ 신청기관은 결제원이 알고리즘 검증을 마치고 통합포털에 공표한 검증결과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신청기관은 검증받은 서비스 종료 또는 알고리즘 변경시 결제원으로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5조(수수료 납부) ① 결제원은 알고리즘 검증 신청 승낙 통지 시 수수료 금액과 납부기한을 신청기관에 고지하여야 한다. 수수료 금액은 통합포털에 별도 게시된 기준에 따른다.

② 신청기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납부기한 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관이 별도의 기한 연장 요청 없이 수수료를 미납할 경우 해당 신청은 취소로 간주되며, 동 행위가 3회 이상 계속될 경우 결제원은 향후 해당 신청기관의 알고리즘 검증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알고리즘 검증 작업 착수 이후 환불되지 않는다.

제6조(알고리즘 검증중단) ① 신청기관은 언제든지 알고리즘 검증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결제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청기관에 대한 알고리즘 검증을 중단할 수 있다.

1. 결제원이 신청기관의 신청 승낙 이후 제3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알게 된 경우
2. 신청기관이 알고리즘 검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3. 그 밖에 결제원이 전2호에 준하는 일반 사회통념상 합당한 사유로 알고리즘 검증을 중단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비밀유지) 신청기관 및 결제원은 이 약정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성실히 유지하고 상대방의 사전 협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미 공개되었거나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면책) 결제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청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결제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전산장애, 전산오류 그 밖의 IT관련 문제로 인한 손해
2. 검증완료 후 신청기관의 알고리즘 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제9조(분쟁해결) 이 약정과 관련하여 결제원과 신청기관간에 분쟁 발생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상호노력하며, 발생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약정유효기간)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결제원의 알고리즘 검증 신청 승낙 통지로부터 검증받은 서비스의 종료 또는 알고리즘의 변경시까지로 한다.

제11조(특약 사항) ① 신청기관은 관련 법령개정 및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본 약정 내용이 변동 가능함을 인지하며, 이 경우 결제원은 신청기관에 변경 내용을 서면, 이메일,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통지한다.
② 제1항의 통지에 대하여 신청기관이 서면, 이메일,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한 때에 변경내용의 효력이 발생한다.

<별지 2>

2. 사업자등록증

<별지 3>

3. 단계별 증빙화면

회사명	서비스명
주제	1. 예금성 상품의 종류(정기예금, 정기적금)
내용	※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예금성 상품의 종류를 알아볼 수 있는 화면

주제	2.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내용	<p>※ 금융소비자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의 등 관련 동의 절차에 관한 화면 - 여러 페이지로 작성 가능</p>	화면 설명

주제	3. 정보 입력화면	
내용	<p>※ 고객이 예금성 상품을 찾기 위한 정보 입력화면 - 여러 페이지로 작성 가능</p>	화면 설명

주제	4. 조회 결과 화면
내용	<p>※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결과화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이 상단에 배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입력 또는 선택 값에 의해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 확인 가능</p> <p>- 여러 페이지로 작성 가능</p> <p style="text-align: right;">화면 설명</p>

주제	5. 광고 화면	
내용	<p>※ 광고 화면이 있다면 검색결과와 관련있는 광고이어야 함 - 여러 페이지로 작성 가능</p>	화면 설명

<별지 4>

4. 소스코드

회사명	서비스명
주제	1. 입력 자료 구조
	<p><input type="checkbox"/> 고객으로부터 입력받는 데이터의 구조체 정의 부분을 발췌하여 작성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모두 취급할 경우, 상품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p> <p>구조체명 { 변수명, 자료유형, 한글 주석 }</p>
내용	

주제	2. 출력 자료 구조
내용	<p><input type="checkbox"/> 화면에 출력하는 예금성 상품 목록의 구조체 정의 부분을 발췌하여 작성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모두 취급할 경우, 상품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p> <p>구조체명 { 변수명, 자료유형, 한글 주석 }</p>

주제	3. 메인 로직 및 정렬 함수
내용	<p><input type="checkbox"/> 다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스 코드 발췌하여 작성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모두 취급할 경우, 상품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p> <p>금융사 데이터 수신 ↓ if 가입금액순 가입금액순 정렬 호출</p> <p>else if 최대금리순 최대금리순 정렬 호출 ↓ 정렬 결과를 화면에 표시</p> <p>정렬 함수 또는 메소드 정의</p>

주제	4. 조회 결과 화면
내용	<p>※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결과화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이 상단에 배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입력 또는 선택 값에 의해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 확인 가능</p> <p>- 여러 페이지로 작성 가능</p>

주제	5. 광고 화면	
내용	<p>※ 광고 화면이 있다면 검색결과와 관련있는 광고이어야 함 - 여러 페이지로 작성 가능</p>	화면 설명

<별지 5>

5. 자가평가서 점검결과

회사명

서비스명

공통기준

구분	자가 평가 내용	자가 평가 결과
1. 일반	① 예금성 상품의 종류(정기예금, 정기적금)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② 금융소비자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관련 동의 절차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③ 금융소비자 대상 필수적인 안내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 예금성 상품의 계약주체는 신청회사(플랫폼 운영사)가 아닌 금융회사이며 해당 금융회사에서 상품 가입이 진행된다는 점이 안내되는지 확인 ⇒ 비교추천이 이루어지는 예금성 상품은 모든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이 아닌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이라는 점에 대해 안내되는지 확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④ 예금성 상품 외 다른 종류의 상품을 추천하거나, 중개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실명확인, 예금수취, 계약체결 대리 등)를 수행하지 않는지 확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금융소비자 선택 가능성	① 금융소비자가 기본금리, 최대금리, 가입금액 및 가입기간 등 저축성 상품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이에 부합하는 예금성 상품을 검색할 수 있는가? ⇒ 우대금리 조건이 있는 경우 동 항목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입력 또는 선택 가능 확인 ⇒ 최초 조회 후 금융소비자가 금리 범위와 가입금액 범위를 조정하여 상세 검색 가능 확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구분	자가 평가 내용	자가 평가 결과
	<p>②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으로 인해 ①번의 검색 기능이 왜곡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 ⇒ 프로그램 로직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p>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예금성 상품 배열 기준	<p>① 금융소비자가 상기 2의①에 따라 검색하는 경우에 금리 또는 가입금액이 높은 예금성 상품을 상단에 배치시키는 등 금융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유리한 조건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예금성 상품이 배열되어 있는가? ⇒ 기본금리 순(또는 최대금리 순), 가입금액 순으로 배열되는지 확인 ⇒ 금리가 동일할 때는 가입금액이 높은 순, 가입금액이 동일할 때는 금리 높은 순으로 정렬 ⇒ 금리 및 가입금액이 모두 동일할 때는 1금융권을 우선 정렬 또는 금융회사명, 상품명의 오름차순 정렬 ⇒ 상기 내용에 부합되도록 소스 코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p>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p>②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으로 인해 ①번의 결과 기능이 왜곡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 ⇒ 프로그램 로직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p>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관련 없는 광고 금지	① 금융소비자가 상기 2의①에 따른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에 금융상품을 광고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①-1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상기 검색결과와 관련 없는 동종의 금융상품 광고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추가기준(개인화된 예·적금 상품 비교·추천서비스인 경우)

1. 금융소비자 선택가능성 (검색)	<p>① 우대조건을 반영한 예상금리 제공시 우대조건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적용될 것</p> <p>1) (고객이 직접 우대조건을 선택하는 경우) ⇒ 우대금리 조건을 누락 없이 정확히 불러오는지 확인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금융회사)가 우대금리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지체 없이 반영 되는지 확인</p> <p>2) (마이데이터 등으로 자동 계산 하는 경우) ⇒ 우대조건 충족여부 판단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하는지 확인 ⇒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대조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로직이 정확한지 확인</p>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예금성 상품 배열 기준 (배열)	<p>① 예상금리에 적용된 우대조건이 정확하고 소비자가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표시되는지 확인</p> <p>② 현재 시점에서 충족되지 않은 우대조건의 경우, 최초 예상금리 표출시 금리산정에 반영하지 않되 고객이 직접 선택하여 우대조건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는지 확인</p>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